

---

#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(요일제) FAQ

---

2026. 03.

기후에너지환경부

1 승용차 5부제 의무 대상차량은?

<답 변>

-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(이하 '고시')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5부제 준수 의무 대상이며,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렌트카도 승용차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다만,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2 공용(관용)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인지?

<답 변>

-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는 전부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.
- 출장 일정 등을 조율하여 승용차 5부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, 불가피한 경우 제외차량 기타(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)으로 제외차량 적용 하시길 바랍니다.

3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5부제 의무 대상인지?

<답 변>

-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('주의', 3/24기준)에 따라, 내연차(경차,하이브리드)도 5부제 의무 대상입니다.

4 국·공립대학교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차량도 의무 대상인지?

<답 변>

- 국·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임직원의 차량이 의무 대상이며, 학교 학생 및 방문자의 차량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
5 공공기관이 민간 건물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무 대상인지?

<답 변>

- 공공기관이 민간 건물에 소재한 경우 출입차단기를 통한 자동 적발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,
- 출입차단기가 없는 경우 출근 시간 중심으로 공공기관 근무자가 통제하고 일일 2회 이상 주차장 수시 단속하여야 합니다.

6 승용차 5부제 의무 대상 제외 가능 대상은?

<답 변>

- 전기차, 수소차, 장애인 사용(동승) 자동차, 국가유공자 차량, 임산부·유아(미취학 아동) 동승 차량,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(30km 이상) 출퇴근 차량,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차량은 제외할 수 있으며,
- 기관 특성에 따라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“제외증명서”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.

7 승용차 5부제 의무 대상 제외증명서 양식을 꼭 준수해야하는지?

<답 변>

-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양식을 준용하되, 필요시 항목 추가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‘적용제외기간’, ‘제외사유’, 기관 날인 등 양식 내 정해진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.

8 공공기관 청사 인근 주차시설, 도로변 등에도 단속 필요한지?

<답 변>

- 기관 관리자는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,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를 점검하여야 하며, 지자체를 통해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

9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?

<답 변>

- 네,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·군에 입지한 공공기관도 승용차 5부제 대상입니다. 다만,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나,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제외기준 또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제외가 가능합니다.

10 지사, 센터 등 소속·산하기관도 5부제 시행해야 하는지?

<답 변>

- 네, 공공기관의 지사/지역본부, 소속기관도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기관 총괄 담당자 각 지역본부, 소속기관 등의 시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별도 취합·보관하여야 하며, 이행실태 점검 시 지사/지역본부, 소속기관의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1 승용차 5부제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은?

<답 변>

-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 현장 계도 및 경고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시 일정기간 출입통제, 상습위반 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
- 5부제 준수 의무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미등록한 경우 적발 즉시 징계하여야 합니다.

12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을 목격·신고한 경우 조치 방안은?

<답 변>

- 승용차 5부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청사 내 주차장 또는 인근 주차시설에 주차한 것을 내·외부인이 목격하여 해당 사실은 기관 관리자에게 신고한 경우
- 신고 받은 기관 관리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, 위반 내용이 확인 될 경우 경고, 출입통제,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13 이행실태 점검 시 미흡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패널티는?

<답 변>

- 고시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치명령, 조치결과 보고, 언론 공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4	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(고시)에 관한 규정에 따른 5부제와 차이점은?
----	---

<답 변>

- 고시에 따른 5부제는 관리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, 이번 자원안보 위기 사태를 계기로 시행 계획, 이행 결과 제출 및 실태 점검 등의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본 시행지침에 따라 “**끝번호 요일제**”를 일괄 적용합니다.(선택요일제 불가)
-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하여, 2026년 3월 25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본 시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며,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시에 따릅니다.

15	5부제 시행 계획과 이행 결과는 어디서 제출하는지?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답 변>
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(<http://min24.energy.or.kr/pe>) 내 승용차 5부제 탭에서 추진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시행계획 제출은 2026년 3월 31일까지, 이행 결과는 매달 15일까지 상기된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행 결과보고와 관련,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(제도운영 실무기관)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